

- ▶ 2010. 7. 3(토) 배포
- ▶ 총 6쪽

▶ 사무국 이재준 사무국장  
▶ 김인순 담 당

TEL : 02)541-1493

E-MAIL : mwc@molab.go.kr

FAX : 02) 541-1496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 밤샘 회의 끝 표결 처리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7.2(금) 오후부터 7.3(토) 새벽6시 20분까지 2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6,320원이며,
  -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 2.75% 보다 2.35%p가 높은 수준이다.
- '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당초 경영계는 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

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월 29(화)을 넘겨 개최된 7월2(금) - 3(토)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되었다.

-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사양측에서 총 9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진통 끝에 시급 4,320원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2. 2010년도 최저임금결정 경과
3.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1>

##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단위 : 원, 개소, 천명, %)

연 도	적 용 업 종	금액(시간급)	인상률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11	1명 이상 전산업	4,320	5.1	16,479	2,336	14.2
'10	1명 이상 전산업	4,110	2.75	16,103	2,566	15.9
'09	1명 이상 전산업	4,000	6.1	15,882	2,085	13.1
'08	1명 이상 전산업	3,770	8.3	15,351	2,124	13.8
'07	1명 이상 전산업	3,480	12.3	14,968	1,784	11.9
'05. 9. ~ '06. 12.	1명 이상 전산업	3,100	9.2	14,584	1,503	10.3
'04. 9. ~ '05. 8.	1명 이상 전산업	2,840	13.1	14,149	1,245	8.8
'03. 9. ~ '04. 8.	1명 이상 전산업	2,510	10.3	13,631	1,035	7.6
'02. 9. ~ '03. 8.	1명 이상 전산업	2,275	8.3	13,216	849	6.4
'01. 9. ~ '02. 8.	1명 이상 전산업	2,100	12.6	7,152	201	2.8
'00. 9. ~ '01. 8.	1명 이상 전산업 ( '00.11.24 ~ )	1,865	16.6	6,692	141	2.1
	5명 이상 전산업 ( ~ '00.11.23)			5,367	98	1.8
'99. 9. ~ '00. 8.	5명 이상 전산업	1,600	4.9	5,031	54	1.1
'98. 9. ~ '99. 8.	10명 이상 전산업	1,525	2.7	5,136	23	0.4
'97. 9. ~ '98. 8.	10명 이상 전산업	1,485	6.1	5,325	124	2.3
'96. 9. ~ '97. 8.	10명 이상 전산업	1,400	9.8	5,240	127	2.4
'95. 9. ~ '96. 8.	10명 이상 전산업	1,275	8.97	5,381	103	1.9
'94. 9. ~ '95. 8.	10명 이상 전산업	1,170	7.8	4,864	103	2.1
'94. 1. ~ '94. 8.	10명 이상 전산업	1,085	7.96	4,916	102	2.1
'93	10명 이상 전산업	1,005	8.6	5,045	228	4.5
'92	10명 이상 전산업	925	12.8	4,620	393	8.5
'91	10명 이상 전산업	820	18.8	4,556	393	8.6
'90	10명 이상 전산업	690	15.0	4,386	187	4.3
'89	10명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600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88	10명 이상 제조업	1그룹 462.50 2그룹 487.50		2,267	94	4.2

주 : ·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01.9~'02.8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명, 10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4명이하 사업체의 상용직)의 원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수치이며, 이후부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임  
·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임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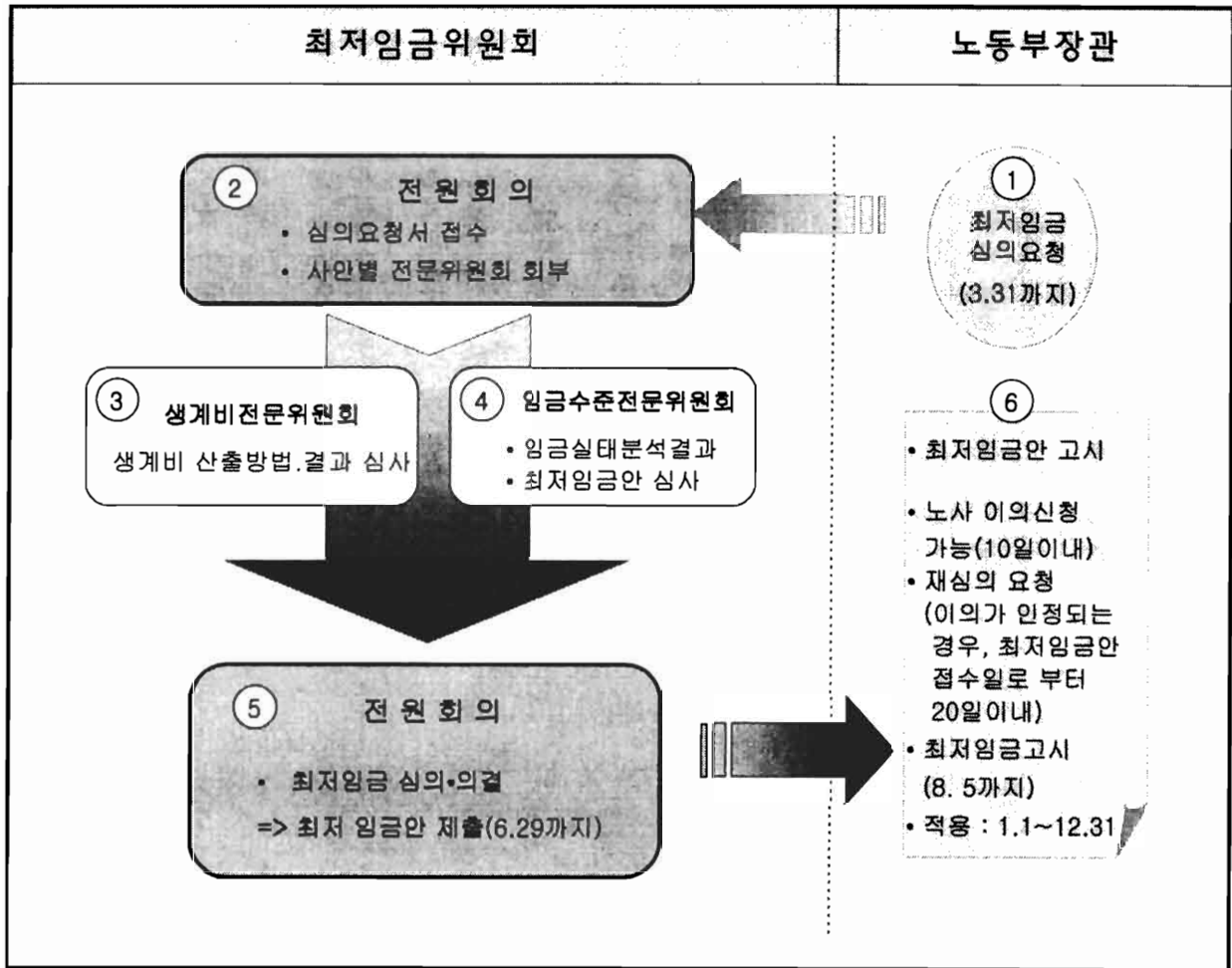
## 최저임금 결정 경과

- 심의요청서 접수 : '10. 3. 31.
- 심의기간 : 요청일로부터 90일('10. 4. 1 ~ 6. 29)
- 제출기한 : '10. 6. 29(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내역

(단위 : 원, %)

회의	안 제시 차 수	근로자		사용자		비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제2차 전원회의 (4.2)	심의요청서 접수	-	-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부 -요구안 제출 안내(임금수준위)	
2차 임금수준 (5.28)	최초 제시안	5,180	26.0	4,110	0.0 (동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전산업 적용, 시간급 고시 전원회의에 보고의결	
3차 전원회의 (6.4)	상정	5,180	26.0	4,110	0.0 (동결)	-결정단위 및 사업종류별 적용 심의 의결 → 모든 산업 적용, 시간급 고시	
5차 전원회의 (6.18)	1차	5,110	-	-	0.2		
6차 전원회의 (6.25)	2차	5,080	23.6	4,125	0.4		
“	3차	5,040	22.6	4,130	0.5		
“	4차	5,000	21.7	4,140	0.7		
7차 전원회의 (6.28)	5차	4,920	19.7	4,145	0.9		
“	6차	4,900	19.2	-	-		
7차 전원회의 (6.29)	7차	4,850	18.0	4,150	1.0		
8차 전원회의 (7.2)	8차	4,800	16.8				
8차 전원회의 (7.3)	9차	4,470	8.8	4,223	2.75		
8차 전원회의 (7.3)	공익안	하한선 4 ~ 상한선 6.1					
“	공익안	4,320원 ( 5.1 )					공익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

##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⑥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